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위원	고 응 중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지역도시과장)	답변일자	2005년 12월 16일
회 의	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요지】

- 홍정천 상류지역 개발행위 제한하는 근거와 내용은?

【답변요지】

- 홍정천 상류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이며 봉평면 상수도 식수전용댐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고 2004.4.17 평창군 고시 제2004-136호로 고시한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 제한규정"에 의거 제한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평창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대산리조트타운지구와 같이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주요도로변 가시권지역등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 한 사항으로서 제한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입니다.